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3
------	-----

2019. 8. 29.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6일, 임만균 의원(찬성의원 9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29.)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임만균 의원)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정부는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하였음(2016.1.6.).

- 또한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 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한 바 있음(2013.5.22.).
- 이에 조례안은 이들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있음.
- 조례의 일괄정비는 관련법령 제·개정사항의 미반영, 용어의 정비, 띄어쓰기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적시성·적합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일괄정비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연번	조 례 명	조 항	개 정 내 용
1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 다만, 일괄정비는 자구수정이나 제명 변경이 필요한 다수의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방식이므로, 일괄정비를 통해 단 2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정비 효과가 크지 않아 개별조례의 개정시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는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번호가 제47조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도 시행령 제81조로 변경되어 이를 수정 반영해야 함.

〈 수정의견 〉

일괄정비안	수 정 의 견
<p>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로 한다.</p>	<p>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p>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인용된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3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23
----------	-----------

제안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인용된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 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p> <p>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u>「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u>”로 한다.</p>	<p>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p> <p>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u>「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u>”로 하고, “<u>같은 법 시행령 제57조</u>”를 “<u>같은 법 시행령 제81조</u>”로 한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서울특별시 조례 관련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